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58회 제1차 정례회(2022. 9. 23.)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페이지
1.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	1
2. 2022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2-76
----------	-------

2022. 9. 23.
전문위원 신준호

1. 제출경위

- 가. 제 출 자 : 마포구청장(의회사무국)
- 나. 제 출 일 : 2022. 9. 5.
- 다. 회 부 일 : 2022. 9. 13.

2. 결산현황

가. 세입결산

-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518만640원을 징수 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음.

(단위 : 원)

과목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미수납액	징수율(%)	
						현액 대비	징수 대비
합 계	-	-	5,180,640	5,180,640	-	-	100.0%
세외수입	-	-	5,180,640	5,180,640	-	-	100.0%
임시적세외수입	-	-	5,180,640	5,180,640	-	-	100.0%

- 임시적 세외수입(기타수입)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2020년 12월분 기간제 속기사 정산보험료(36,780원), 2020년 12월 직원 급여 및 수당 반납금(133,860원), 출장여비 반납(10,000원), 방송장비 교체시 발생한 노후장비 매각처리 비용(5,000,000원)임.

나. 세출결산

(단위 : 원)

과목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4,607,348,000	4,607,348,000	3,886,252,820	-	721,095,180
선진의회상 정립	2,238,345,000	2,238,345,000	1,825,884,730	-	412,460,270
의정활동 지원	2,175,939,000	2,173,939,000	1,762,892,890	-	411,046,110
의정활동 홍보	62,406,000	64,406,000	62,991,840	-	1,414,160
행정운영경비	2,369,003,000	2,369,003,000	2,060,368,090	-	308,634,910
인력 운영비	2,221,885,000	2,221,885,000	1,936,331,180	-	285,553,820
기본경비	147,118,000	147,118,000	124,036,910	-	23,081,090

-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합해 당초 예산액과 동일한 46억734만8,000원으로,
- 결산 결과 예산현액의 84.35%인 38억8,625만2,820원이 지출되었고, 7억2,109만5,180원(15.65%)이 불용되었음.
- 세출에 대한 주요 사업별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의정활동 지원’은 예산현액 21억7,393만9,000원 중 17억6,289만2,890원을 집행했음.
 - ‘의정활동 홍보’는 예산현액 6,440만6천원 중 6,299만1,840원을 집행했음.
 -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23억6,900만3,000원 중 20억6,036만8,090원을 집행했음.
- 집행잔액 구분
 - 의정활동 지원: 4억1,104만6,110원(불용률 18.91%)
 - 의정활동 홍보: 141만4,160원(불용률 2.2%)
 - 인력운영비: 2억8,555만3,820원(불용률 12.85%)
 - 기본경비: 2,308만1,090원(불용률 15.69%)

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단위 : 원)

과목	집행잔액				
	계	낙찰차액	지출잔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액
합 계	721,095,180	-	711,904,180	-	9,191,000
선진의회상 정립	412,460,270	-	403,269,270	-	9,191,000
의정활동 지원	411,046,110	-	401,855,110	-	9,191,000
의정활동 홍보	1,414,160	-	1,414,160	-	-
행정운영경비	308,634,910	-	308,634,910	-	-
인력운영비	285,553,820	-	285,553,820	-	-
기본경비	23,081,090	-	23,081,090	-	-

-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총 세출예산 집행잔액 7억2,109만5,180 원으로 의정활동 지원에서 예산절감액으로 919만1,000원, 의정활동 지원, 의정활동 홍보 및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과목의 지출잔액으로 7억1,190만 4,180원이 발생하였음.

라. 연도별 예산 집행액 및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21	4,607,348	3,886,253	721,095	15.65%
2020	3,868,848	3,487,930	380,918	9.85%
2019	3,950,236	3,553,528	390,724	9.89%
2018	3,957,111	3,449,764	478,592	12.09%
2017	3,537,515	3,348,761	380,918	14.34%

※ 2021년 예산액은 2020년도 대비 738,500천원이 증가됨.

마. 주요사업 집행잔액 발생 현황

(단위 : 원)

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의정공통 업무지원 및 의장단 활동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4,393,000	21,818,370	2,574,630	10.55
	공공운영비	19,100,000	9,232,395	9,867,605	51.66
	국내여비	6,880,000	3,583,600	3,296,400	47.9
	국제화여비	24,000,000	-	24,000,000	1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494,000	29,255,750	21,238,250	42.06
	의정활동비	237,600,000	230,743,340	6,856,660	2.89
	월정수당	560,667,000	544,487,150	16,179,850	2.89
	의원국내여비	11,210,000	5,067,800	6,142,200	54.79
	의정운영공통경비	104,188,000	57,591,455	46,596,545	44.72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20,893,000	102,348,380	18,544,620	15.34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	4,700,000	540,000	4,160,000	88.51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32,000,000	28,117,400	3,882,600	12.13
	의원정책개발비	90,000,000	-	90,000,000	100
	의장협의체부담금	7,000,000	7,000,000	-	-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7,662,000	12,985,370	4,676,630	26.4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1,447,000	20,655,510	791,490	3.69
	의원상해부담금	39,600,000	-	39,600,000	100
	시설비	594,402,000	594,393,220	8,780	-
	자산및물품취득비	70,000,000	20,424,010	49,575,990	70.82
	도서구입비	4,000,000	3,799,740	200,260	5
국외 선진의회 연수	사무관리비	980,000	-	980,000	100
	의원국외여비	61,425,000	-	61,425,000	100
기본경비	국내여비	36,540,000	14,650,000	21,890,000	59.9

바.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 예산 이용·이체: 해당 없음

○ 예산 전용: 총 3건, 14,500,000원

- 구의회 전자회의 및 투표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매 부족에 따른 전용 사용 (10,000천원)
- 의정활동 홍보사업을 위한 신문구독료 추가 예산확보를 위한 전용 사용 (2,000천원)
- 2021. 1. 1.자 및 2021. 7. 1.자 공로연수자 복리후생비 지급에 따라 당초 편성한 직급보조비 예산 부족에 따른 전용 사용 (2,500천원)

(단위 : 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구분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전용	입법및 선거관리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자산및물품 취득비	80,000,000	10,000,000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사무관리비	46,898,000		10,000,000
	입법및 선거관리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공공운영비	21,100,000	2,000,000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	사무관리비	21,710,000		2,000,000
	기타	인력운영비	보수	1,937,162,000	2,500,000	
		인력운영비	직급보조비	61,380,000		2,500,000

○ 예산 변경: 총 2건, 56,495,000원

- 의원역량개발비 확보를 위한 변경 사용 (5,000천원)
-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비서) 3명 신규 채용으로 인건비 부족에 따른 변경 사용 (51,495천원)

(단위 : 원)

과 목				예산액	변경금액	
구분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변경	입법 및 선거관리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109,188,000	5,000,000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27,000,000		5,000,000
	기타	인력운영비	보수	1,988,657,000	51,495,000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73,101,000		51,495,000

사. 다음연도 이월액: 해당 없음.

아. 기금 결산 : 해당 없음.

3.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및 같은법 시행령¹⁾ 등에 따라 2021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및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승인받고자 제출된 것임.
- 결산검사의견서 개선 및 건의(권고) 사항 중 의회사무국에 대한 결산검사의견은 없음.

<표 1. 결산 검사위원 명단>

검사기간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2022. 3. 28.~ 4. 22.	강명숙	유영재	신정기	정현철	이상훈

- 2021회계연도 결산 중 의회사무국의 세입결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의회사무국의 세입예산은 수당, 여비 및 급여 반납과 노후장비 매각처리 비용 등으로 발생하였음.
- 임시적 세외수입은 특성상 세입예산 편성 당시 세입에 대한 예측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특성이 있지만 의회사무국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수당 및 급여 등의 반납금과 노후 방송시설 교체에 따른 매각처리비용이 전년도 예산현액에 미반영되어 발생된 것으로 행정착오에서 발생된 지출행위로서 향후에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음.
-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은 해당 사항 없음.
-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6억734만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약84.35%인 38억8,625만2,820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 7억2,109만5,180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전년도 불용률 9.85%와 비교하면 불용률이

1)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소 증가함.(9.85%→15.65%)

- 최근 5년간 세출 결산액 추이는 본보고서 <표>와 같으며, 예산집행 결과 불용률(15.65%)은 전년대비 5.8% 증가하였음. 마포구(일반회계) 평균 불용률(4.5%)²⁾과 비교하면 의회사무국의 불용률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면밀한 예산편성과 함께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 20% 이상인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국제화여비, 의원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의원 정책개발비, 의원상해부담금 등의 사업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그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예산의 과도한 불용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을 저해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앞으로는 사업의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 등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의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의회비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구분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2021년 예산현액 총 12억6,879만2천원 중 10억953만6,405원을 집행하였음.
- 먼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의장협의체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은 85% 정도의 비교적 낮은 예산 집행률을 보였음.
- 의원국외여비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국제교류가 중단된 상황에서, 원활한 예산집행이 불가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됐던 상황으로 2021년 추경이 3차례나 실시하였음에도 감추경을 시행하지 않아 불용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의원국내여비 또한 전국적 코로나19 확

2) 2021 회계연도 마포구 결산서

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됨에 따라 위원회별 세미나 취소 등으로 54.79%의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음.

- 향후에는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액조정 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확보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함. 참고로 일부 광역시도의회³⁾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 분담 등의 이유로 2021년도 예산현액에서 의원국외여비를 전액 삭감한 바 있음.
- 한편, 의원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와 강사료로 사용되는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자체교육)의 불용률은 88.51%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교육 프로그램 축소 운영으로 이해할 수 있겠으나, 2020년의 불용률 65.43%,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의 불용률도 77.84%에 이르러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불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 향후 불용률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함과 동시에,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 조사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편성 등 원활한 교육활동 추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서 불용률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겠음.
- 예산 운용의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예산이용·이체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 1,450만원, 3건과 예산 변경 5,649만5,000원, 2건으로 소요 예산을 사용했음.
- 예산 전용한 전자회의시스템 물품구매와 신문구독, 공로연수자 직급보조비 증감액은 예산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정 예산이 편성된 상황에서 예산부족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사업 계획 및 수요 예측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임.
- 예산 전용은 예산 운용의 탄력성과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예산의 전용이

3) 2021년 당초 예산에서 위원국외여비 전액 삭감 (광주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전라남도의회, 충청북도의회, 강원도의회, 5곳)

가능하더라도 예산 편성단계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을 집행단계에서 전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고

- 아울러, 예산 변경 2건(의원역량개발비 확보, 시간선택제임기제 신규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은 예산 편성 당시 계획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사전 검토가 미비했던 것으로 사료됨.
- 예산은 원칙적으로 사업 계획과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예측하여 편성하고 계획적으로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해 집행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므로 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임. 아울러, 재량에 따라 예산 변경을 남용할 경우 의회 심의·의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예산변경은 가급적 의회 승인이 필요한 추경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 구의회 사무국 예산의 전반적 집행잔액 발생은 대부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행사 미개최 및 사업량의 축소임. 2020년은 갑작스러운 코로나-19바이러스 유행으로 그 대처가 어려웠지만 2021년은 2020년 3월 거리두기 도입, 2020년 11월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정부방침 발표 등 코로나-19 장기화 및 대면모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이에 맞는 사업수행방식 변경 및 사업량 축소 등의 예산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향후에는 전년도 답습이 아닌 사업수행 환경 및 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

「지방회계법」

제14조(결산의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2.>

②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감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6.>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2022년 제1회 의회사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22-84
----------	-------

2022. 9. 23.
전문위원 신준호

1. 제출경위

- 가. 제 출 자 : 마포구청장(의회사무국)
- 나. 제 출 일 : 2022. 9. 5.
- 다. 회 부 일 : 2022. 9. 13.

2.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가. 세 입

- 해당 없음.

나. 세 출

-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087만 원 증가한 42억3,615만5천원임.

(단위:천원)

분야·부문·정책사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4,236,155	4,225,285	10,870	0.26%
정책사업	1,819,463	1,808,593	10,870	0.60%
재무활동	0	0	0	0.00%
행정운영경비	2,416,692	2,416,692	0	0.00%

다. 추가경정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

(단위:천원)

단위사업(회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일반공공행정	1,819,463	1,808,593	10,870	0.60%
입법및선거관리	1,819,463	1,808,593	10,870	0.60%
선진의회상 정립	1,819,463	1,808,593	10,870	0.60%
의정활동 지원	1,720,687	1,709,817	10,870	0.64%
의정활동 홍보	98,776	98,776	0	0.00%
기타	2,416,692	2,416,692	0	0.00%
기타	2,416,692	2,416,692	0	0.00%
행정운영경비	2,416,692	2,416,692	0	0.00%
인력운영비	2,262,492	2,262,492	0	0.00%
기본경비	154,200	154,200	0	0.00%

라. 추가경정 성질별 세출예산안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의원국내여비	11,555	11,210	345	3.08%
의원국외여비	64,050	61,425	2,625	4.27%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	7,700	7,400	300	4.05%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30,400	28,800	1,600	5.56%
포상금	6,000	0	6,000	순증

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업별 현황

(단위:천원)

세부사업 · 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1)의정국내여비	11,555	11,210	345
2)일비	1,140	1,080	60
2)식비	1,425	1,350	75
2)숙박비	3,990	3,780	210
1)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위탁교육비	5,700	5,400	300
1)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정연수	30,400	28,800	1,600
1)의장표창부상품(신규)	6,000	0	6,000
1)의원해외비교시찰 등	49,875	47,250	2,625
2)의원	49,875	47,250	2,625

3. 검토결과

가. 예산규모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2억2,528만5천원보다 0.26%, 1,087만원이 증가한 42억3,615만5천원임.

나.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

- 의정공동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사업의 의원국내여비 34만5천원(3.08%),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30만원(4.05%),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160만원(5.56%), 포상금 600만원, 국외 선진의회 연수 사업의 의원국외여비 262만5천원(4.27%)이 증액 편성되었음.

4. 검토의견

-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과 달리 예산편성 이후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투자수요 발생에 따른 사업비 반영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임.

- 2022회계연도 제1회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제9대 마포구의회 개원을 맞아 의원정수 증가(18명→19명)로 인한 소요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민간위탁)를 의원 1명 증원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표창 조례」(2022. 3. 24.) 개정에 따른 의장표창 부상품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편성사유 및 요건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